##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4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정성호·김남희·김정호

문진석 • 민형배 • 안태준

유호중 • 유후덕 • 이연희

임미애 · 정준호 · 조 국

한정애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

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3항 본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건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0조(재정신청) ①・② (생	제260조(재정신청)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③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u>20일</u>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